##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07년도 제20차 회의

1. 일 자 2007년 9월 20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김 병 화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장 세 근 공보실장

윤 한 근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이 흥 모 금융시장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 〈의안 제31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7년 9월)〉

(1) 2007년 9월 7일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 었던 의안 제31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7년 9월)」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

의가 종료됨에 따라 주관위원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7년 9월)」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첫째, 대상기간(금년 1~8월)중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이에 대응한 통화신용정책 운용실적을 기술하며 특히 통화신용정책 운영실적에서는 콜금리목표 결정 배경,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치, 통화정책방향 발표문 개선 내용 등을 기술; 둘째, 금번 보고서부터 지방경제동향과 기대인플레이션 설문조사결과를 새로 추가하여 기술

심의위원회의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개요" 부분에서 7월과 8월의 콜금리 목표 인상 결정시 향후의 물가상승 압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관련문구를 수정하였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경제 성장 및 국내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해외충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콜금리 목표 인상을 통해 우리경제의 안정 기반을 보다 견고히 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문장을 수정하였음

주택가격 안정요인으로 언급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도 포함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음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을 기술함에 있어 해외 불안요인에 따른 국 내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커진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문구를 수정하 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안정에 있다 는 점을 명백히 하는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 성 증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수정하였음 이밖에 금년 초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장단기 금리역전현상, 향후 주택 가격 전망, 상반기 주가상승 요인으로서의 주식형펀드로 자금유입 등을 추가 기 술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통계 오류를 반영하여 재정정책에 관한 서술을 수정하였음

"본문" 부분에서는 국내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및 연간 전체 GDP 성장률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부문을 삭제하고 지방경제 동향 도입부분에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문이 작성되 었음을 명시하였음

중소기업대출 금리 동향, 주택담보대출 둔화 요인 및 근원인플레이션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세계경제 전망 관련부분에서 최근 미국 및 일본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7년 9월)(심의위원회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 '통화정책'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참조)

#### 〈의안 제32호 —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안 제32호「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세, 시중유동성 및 지역금융동향 등에 비추어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이러한 의견에 모두 동의하 였음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2007년 4/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 (3) 심의 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 의결사항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6.5조원으로 정한다

#### <의안 제33호 —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안 제33호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의 통화 및 금융시장 여건, 금융기관의 유동성사정 등에 비추어 서 금융기관 유동성부족사태의 대비 등을 위한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이러한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음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2007년 4/4분기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 (3)심의 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 의결사항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